

Korean Tax Update

October 2021, Issue 88

[조세뉴스]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 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전문보기]

국세청은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신종세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제를 갖추고 불공정 탈세에 엄정히 대응해 왔으나,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산업에서의 지능적 탈세가 증가하고 공직경력 특혜를 통한 불공정 탈세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고자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조사대상은 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을 통하여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 공직경력의 우월적 지위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탈루한 전문직 등 총 74명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지난해보다 16.6% 증가 (국세청) [전문보기]

올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3,130명이 총 59.0조 원을 신고하여 전년대비 인원은 16.6% (445명)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1.5% (0.9조 원) 감소함. 국세청은 향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 이외 연소자에 대한 역외 증여 및 국외소득 탈루혐의를 집중 검증할 계획임.

[판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2 조 제 4 항의 '합병'의 의미 (납세자승)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 두 37376 판결

- 구 상속세법(2011.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은 구 상속세법 제4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같은 법 제41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대한 포괄적인 예시규정인 점, 구 상속세법 제42조 제4항의 법문상 '주식 및 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으로 되어 있어 '합병'은 '주식 및 출자지분의'와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주식 등의 합병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므로 결국 '주식 및 출자지분의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보이며, 위 조항에 함께 열거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상장

등은 모두 일반적으로 재산가치가 증가되는 사유로 볼 수 있음에 반해 회사의 단순한 합병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려운 점, 구 상증세법 및 이 사건 처분 이후 개정된 현행 상증세법(2015. 12. 15. 개정된 것)의 규정들을 보더라도 ‘합병’을 과세계기로 포착하고 있는 것은 제38조(불공정비율에 따른 합병의 경우) 또는 제41조의5(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의 경우) 정도인데, 조세법률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이라는 문언에만 의존하여 그 의미를 종전부터 위 제38조와 제41조의5로 과세해 오던 것 외에 추가로 ‘합병 일반’으로까지 그 과세 외연을 더 넓힌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던 ‘합병’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따른 상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따라서, 원고들이 아버지로부터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A의 주식을 증여받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 합병되었다고 주식회사 A가 합병에 따라 상장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TKC 코멘트]

·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 1999. 12. 28. 신설되어 상장에 따른 변칙증여를 과세하게 되자 합병의 방법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규제하기 위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이 2002. 12. 18. 신설됨. 2003. 12. 30.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에 따라 포괄적 예시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이 신설되어 개별적 예시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조항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대법원은 이러한 입법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의 “합병”을 ‘합병에 따른 상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합병에 따라 부여된 이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국승)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 두 66244 판결

- 원고들은 합병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합병법인 역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들 주식에 대하여 과소배정된 합병신주와 관련하여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및 구 상증세법 제38조에 따라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법인세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합병법인이 이 사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이를 자기주식으로 상당한 기간 보유한 이상, 합병신주를 배정받지 않거나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합병과 동시에 이를 소각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그러한 자기주식에도 양도성과 자산성이 있어 이를 다른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또한, 법인의 주주가 자신의 주식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더라도 그 자산 자체를 주주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인 소유의 포함주식이나 자기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이익분여액 또는 증여액도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포함주식과 이 사건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적게 배정됨에 따라 합병법인의 주주들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해당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

[심판례]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주식발행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도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취소)

조심 2021 지 1021, 2021. 8. 26.

-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2014. 6. 27. 등에 이 건 수탁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이 건 수탁자 명의로 이전등기되었고 청구법인은 그 후인 2015. 7. 13.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개정 후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동 규정은 2016. 1. 1.부터 시행되어 청구법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5. 7. 13.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그 당시 타인인 이 건 수탁자 소유의 쟁점부동산까지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TKC 코멘트]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이 위탁자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판례가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그로 인해 조세회피 목적의 신탁행위가 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29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2016. 1. 1. 시행)은 “법인(위탁자)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도 위탁자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음. 본 심판례는 해당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으로서 위 판례의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므로, 현행 법령 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예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

조심 2021 중 2746, 2021. 9. 16.

-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상품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면 청구법인과 사전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청구할인액을 부담하는 사안에서 처분청이 카드사가 부담한 청구할인액을 청구법인의 2015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서,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 특정 신용카드 사용 시 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 매장에서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 하였으므로 쟁점할인액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여 매출예누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을 카드사로부터 추후에 보전 받은 것은 청구법인과 카드사간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상호 간에 손실을 부담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거래의 공급가액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 할인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예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쟁점거래가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조심 2020 서 2604, 2021. 9. 30.

- 제공되는 용역이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의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급받는 자의 입장을 기준으로 '역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소비지과세원칙에 부합하며, 국내외에서 제공된 용역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경우에는 그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 졌는지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2004두7528). 쟁점거래는 일본에서의 석탄회 모집·선적·운송이라는 국외용역과 국내에서의 수입통관·운송·폐기물의 재활용처리라는 국내용역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용역으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폐기물인 석탄회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본에서 반출된 석탄회를 청구법인이 국내 공장에서 시멘트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국내에 반입된 석탄회는 위험물질 제거 등 추가적인 폐기물 처리절차 없이 그대로 시멘트 제조원료로 재활용되므로 국내에서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일본선적항에서의 석탄회 반출로 보임. 따라서 쟁점거래는 용역의 국외 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국내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1 차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2 차 경정청구를 하면서 동일한 사유를 포함하여 2 차 경정청구를 한 경우 1 차 경정청구부분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21 지 0787, 2021. 8. 31.

-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정청구기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지방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이미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제2차 경정청구 중 제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청구부분의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음.

[TKC 코멘트]

-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재차 경정청구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나, 감사원(감심2018-948, 2020. 4. 23. 취소)과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18, 2021. 1. 4.)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미 거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정청구기간 내라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경정청구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법원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청구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차 경정청구가 경정청구의 기간 내인 이상 반복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재차 경정청구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서울고등법원2012누39775, 2013. 6. 5.).

선행처분(증여세) 취소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감소되자,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행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20 서 1486, 2021. 9. 8.

- 대법원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과세단위가 변경되는 경우 후행처분에 대한 특례제척기간 적용은 기본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대법원2017두30757)이기는 하나, 이는 후행처분의 세목이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행확정판결과 후행처분 사이의 상호관련성이 얼마나 밀접한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취지(대법원2020두38447)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과세단위 변경을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세법 고유의 법리와 논리에 따라 상호연관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허용하는 것이 조세정의 등 헌법적 가치에 보다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이 건에서의 선행처분은 증여세, 후행처

분은 양도소득세로서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세물건에 대한 세목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에서 "증여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확인되고, 세법상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양자 간 먼저 과세된 부분은 이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은 조세법 고유의 당연한 법리에도 해당하므로 세목변경이라 하여 모든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부과제척기간을 제한하는 명분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형식적인 법적안정성 보장을 위해 쟁점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포기할 명분은 약한 반면, 쟁점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입법 의도가 확인(포괄주의)됨에도 과세요건 등 입법기술상의 미흡으로 증여세 과세가 취소된 것이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과세되어야 하는 점, 이 건 사례에서 이미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선행판결에 따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변경(감소)되는 사정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대상 물건의 취득가액이 변경된 사정이 단순히 법률적 평가로 국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대하여 판결결과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어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대법원2006두10023)한 점 등에 비추어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청의 이 건 후행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TKC 코멘트]

· 대법원은 쟁송의 대상이 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판결로 취소되자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양도소득세를 재처분한 사안에서, 이 사건 처분은 종전 처분과는 다른 새로운 결정이므로 선행 확정판결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대법원 2017두30757, 2020. 8. 20.).

[예규]

특수관계인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따라 전일종가거래 시 증여세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4, 2021. 10. 5.

-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상증법§35① 및 상증령§26①(2), 상증칙§10 의 6 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TKC 코멘트]

- 위 기재부 예규는 종래 국세청의 해석과 동일한 내용임(서면 4 탐-784, 2007. 3. 6.).
- 위 예규에 언급된 관련 규정 중 상증칙 제 10 조의 6 은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에 관한 상증법 제 44 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음.

- 한편,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간에 특정물량·가액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사전 계획하여 장내거래로 실행한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 매매로 보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기획재정부재산-227, 2021. 3. 10.).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117, 2021. 9. 17.

-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 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 조 제 2 항 제 5 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22 조 제 3 항 제 1 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6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조특법 제 16 조의 4 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하였으나 그 중 일부 주식을 행사일부터 1 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 경우, 처분한 당해 일부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300, 2021. 9. 30.

-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의 4 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여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 20 조 또는 제 21 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처분한 당해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세법」 제 94 조 제 1 항 제 3 호 각목에 따르는 것임.

합병법인이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임차인 등에게 임대자산을 매각하는 사업방식에 따라 적격합병 사후관리 기간 내에 승계받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자산의 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 80 조의 4 제 8 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469, 2021. 9. 30.

- 내국법인이 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을 적격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이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던 렌탈자산을 승계한 경우로서, 일정기간 임대 후 임차인 또는 시장에 매각하는 사업방식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승계한 렌탈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80 조의 4 제 8 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Knowledge Center

kr-fmtaxtkc@kr.kpmg.com

© 2021 Samjong KPMG.,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